

농지처분명령



농지처분의무 미이행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시 농지처분명령 (농지법 제11조)

- ①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
-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

※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 (농지법 제57조)

원상회복명령



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(농지법 제42조)

* 무단 휴경 인정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가능

※ '25년 1월 3일부터 행위자 외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원상회복 명령 부과 가능

이행강제금



행정처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(농지법 제63조)

- * 농지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공시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음 금액의 25%를 부과
- *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·징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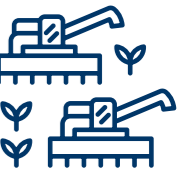
벌칙



불법취득, 불법전용, 용도구역 행위제한 등 위반시 벌칙 적용 (농지법 제57부터 제61조까지)

-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
 -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
- ② 진흥지역 내 농지불법전용 등
 -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
- ③ 진흥지역 밖 농지불법전용 등
 - 3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50% 이하 벌금
- ④ 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위반, 타용도일시 사용 허가없이 불법전용, 전용된 토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
 -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- ⑤ 농지전용신고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신고 없이 불법전용
 -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- ⑥ 농지임대차 위반 등
 - 2천만원 이하 벌금

농지취득시 농업경영의무 등 준수사항 안내





- 농지는 식량공급, 국토 환경 보전의 기반이며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하기 위해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. (농지법 제3조)
-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(농지법 제6조)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업경영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- ① 농지취득 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
- ②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휴경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
- ③ 농지불법전용시원상회복 명령및 농지처분의무부과
- ④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시 농지처분명령
- ⑤ 행정처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
- ⑥ 농지법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

농지취득과 준수사항



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가 취득 가능 (농지법 제6조제1항)

※ 따라서 취득 농지는 농업경영*에 이용 되어야 함

*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(농지법 제2조제4호)

공공기관 등 실험·실습 목적, 주말체험영농 목적, 농지전용 목적 등 예외 경우에도 농지 취득 가능 (농지법 제6조제2항)

※ 실험·실습, 주말체험영농, 농지전용 등 취득 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

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 경우 해당시 허용 (농지법 제23조제1항)

- ① 징집, 질병, 취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
- ② 상속농지, 농지전용허가, 영농여건불리농지, 8년 자경 후 이농한 농지 등
- ③ 60세 이상인 사람이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면서 5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
- ④ 3년 이상 소유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농지은행 위탁임대 등

※ 임대차 위반시 2천만원 이하 벌금

농지처분의무 부과



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 (농지법 제10조제1항)

- ①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휴경한 경우
- ② 농업회사법인이 농지 소유 요건*을 위반한 경우
* 업무집행권자 1/30이상인 농업인
- ③ 공공기관 등이 실험·실습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
- ④ 전용 목적으로 취득한 자가 2년 내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
- ⑤ 상속농지 등이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 등

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더라도 농지처분 명령 유예 가능(3년) (농지법 제12조)

- ①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
- ②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농지의 매도위탁계약체결

※ 농지 처분명령을 받지 않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처분의무는 없어짐